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3. 12. 09(월) 09: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경재 위 원 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20명이 신청 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경재 위원장

- 2013년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 이경재 위원장

- 지난 제40차, 제41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42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경재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4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다만, OBS에 대한 의견청취는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이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운영 규칙 제9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은 공개로, OBS의 의견청취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2013-43-162)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중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중기 방송정책국장

-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안)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37개 사업자 261개 방송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재허가하고, 허가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이 심사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인 한국방송공사 등 8개사에 대해서는 4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강릉MBC 등 29개사에 대해서는 3년으로 의결한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인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SBS, (주)대전MBC, (주)부산MBC, (주)MBC경남, (주)대전방송, (주)KNN에 대해서는 허가유효기간을 4년으로, 그리고 평가점수가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주)강릉MBC, (주)광주MBC, (주)대구MBC, (주)목포MBC, (주)삼척MBC, (주)안동MBC, (주)여수MBC, (주)울산MBC, (주)원주MBC, (주)전주MBC, (주)제주MBC, (주)청주MBC, (주)춘천MBC, (주)충주MBC, (주)포항MBC, (주)광주방송, (주)대구방송, (주)울산방송, (주)전주방송, (주)제주방송, (주)청주방송, (주)G1, (재)극동방송, (재)기독교방송, (재)불교방송, (재)원음방송, (재)평화방송, (주)경기방송, (주)YTN라디오에 대해서는 허가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다입니다. 다음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주)OBS경인TV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후에 재허가 여부를 의결한다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심사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방송, 법률, 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운영은 지난 10월 22일~11월 26일까지 총 13일에 걸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평가점수는 앞에 의결주문(안)으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이번 심사평가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허가 대상 사업자 전체에 대해 현장조사와 사업자 의견청취를 하는 등 실질 심사를 강화하고, 방송평가와의 중복, 방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실적보다는 계획 중심으로 평가를 하였습니

다.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시청자 권익 증진 등 방통위가 지난번에 의결한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KBS는 방송법령에 따른 공적책임, 민영방송은 경영 투명성, 지역방송은 경영 합리화와 지역성 구현, 종교방송은 비영리법인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과거 허가시 부여한 조건·권고사항의 이행실적과 심사위원회 주요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우수·미흡 평가사업자에 대해 조건과 권고사항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종합의견으로 방송환경 측면에서 최근 3년간 지상파방송의 매출점유율, 영업이익률, 광고매출 및 시청점유율 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매체·다채널 방송환경, 매체간 경쟁은 광고매출 감소 및 기타사업 매출 증가 등으로 지상파 매출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광고감소 등 매출구조 변화는 지역방송에서 심각하게 나타나 수익 다변화를 위해 비 방송사업에 집중함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허가시 제출한 재정운영 등 사업계획 이행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영난이 발생할 경우 방송 제작 등 공적책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송사의 적극적인 대응과 방통위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0년도 재허가시에 부과한 디지털 전환 조건 등은 대체로 잘 이행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만 지역 제작비 투자 및 협찬 규정 준수 등은 일부 미흡하였습니다. 편성규약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해 방송법 제4조에 따른 편성규약의 공표 현황 및 편성위원회 운영 실적 등이 일부 미흡하였고, 프로그램의 안정적 송출 및 네트워크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송출장비와 내부 전산망 등 방송시설에 대한 정보보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 방송사에 대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중앙 지상파 차원에서는 KBS는 적자구조 전환에 따른 자체 경영 합리화, MBC는 지역MBC의 독립적인 운영 보장 및 파업 이후 조직 안정화, SBS는 사회 환원 조건 유지 및 계열회사에 대한 콘텐츠 수익 배분 비율 강화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고, 지역방송에서는 지역MBC는 금년 상반기 적자 전환에 따른 경영 효율성 제고 필요, 본사 경영진의 이사 겸직 강화에 따른 독자 경영 저해 등이 지적됐습니다. 지역민방은 최다액출자자의 경영 개입, 방송전문경영인의 단기 임기 문제,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손실 문제 등이 지적됐습니다. OBS경인TV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 정상화에 관한 최다액출자자의 의지 미흡 및 국회 위증 판결 문제, 사옥이전 문제 등이 지적됐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종교방송은 광고 의존도가 높아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부금 중심의 재원 안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경기방송은 재허가기간 중에 방송법령상 소유제한 위반 문제, 지자체 광고 중심의 매출구조 개선 등이 지적됐습니다. 주요 쟁점별 평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허가유효기간에 대해 유료방송과의 경쟁 심화, 광고 등 매출 감소로 방송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위협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전파법령상 허용한도인 최대 유효기간 5년의 부과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허가유효기간을 연장한 입법취지, 심사평가 결과 우수 사업자와 미흡 사업자간의 변별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내 방송환경 변화 상황을 고려하되 지상파 재허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방통위가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OBS경인TV에 대해서는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 기준인 650점 미만이 평가되었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의지 등을 확인한 후에 재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 예로 기타 제작비 투자의 경우 회계 검증 후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2년 연속 배당성향이 높은 사

업자에 대해서는 제작비 투자실적 등을 고려하여 엄중 경고조치하고 정부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대표자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주)KNN, (주)대전방송, (주)청주방송, (주)G1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보다는 엄중 경고하고, 변경신고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역민방의 최대액출자자 관련 보도 등이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간접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종교방송의 보도 허용 문제는 언론으로서의 종교방송 역할, 사회적 파급 효과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고려하여 향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책 건의사항입니다. 재허가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KBS, EBS의 경우에는 재허가보다는 무선국 기술심사와 방송국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허가유효기간을 세분화하고, 조건부 재허가시 임시허가 부여하는 방안, 재허가를 거부할 경우에 대상 방송시설의 양도 등 종합적인 재허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허가 심사기준과 관련해서는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미래 대응 전략과 공정경쟁 시책 등에 관한 심사평가 기준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재허가시 제출한 주요 분야별 사업계획의 이행실적 등은 매년 방통위에 제출토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방송사업자의 정확한 재무구조 분석을 위해서는 지주회사 체제의 방송사는 지주회사 전체의 연결재무제표,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하고 있는 종교방송은 회계분리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시한 전파법에 의한 방송국 재허가 심사결과입니다. 지상파방송국 재허가에 필요한 기술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재허가하되 무선국 혼신해소 등 일부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5>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방송법령에 따른 재허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전파법령에 따른 기술 심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심사평가 점수에 따라 허가유효기간을 차등하여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재허가 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심사의견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결과 등을 반영해서 각 방송사업자별로 <붙임 1>과 같이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주)OBS경인TV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확인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지역제작비 기준을 마련하고 검증하는 문제, 과도한 배당·대표자 변경신고 등을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조치하고, 지역민방의 최대액출자자 보도 관련해서는 방심위에 모니터링을 요청하는 등 사후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건의사항은 내년도 주요 업무과제에 반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연구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 의결해 주시면 바로 방송국 허가증을 교부하고, 연말까지 재허가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를 공표하고, 내년 이후 사후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붙임>자료입니다.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방대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참고하시고 일부 주요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허가 조건입니다. 그중 공통사항입니다. KBS지역국과 지역MBC 18개사, 지역민방 9개사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 대비 프로그램 제작비 비율을 방통위가 제시한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며, 종합편성방송과 보도전문편성방송에 대해서는 편성규약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표하고, 편성위원회 등 운영실적을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 조건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SBS와 지역민방 9개사, 경기방송에 대해서는 경영의 투명성과 자율성 보장을 유지토록 하는 방안 등을 시행토록 하고, TV방송사에 대해서는 1일 최소 19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하도록 하며, 전체 재허가 대상 방송사에 대해서는 무선국 혼신을 적극 해소하도록 하는 등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외에 각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적자 전환에 따른 경영 합리화 및 효율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문화방송에 대해서는 지역MBC의 독립적인 경영과 의사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경영 합리화와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SBS에 대해서는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토록 하고, 계열회사와의 콘텐츠 수익배분 비율 기준을 현재보다는 확대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MBC경남에 대해서는 서부경남지역의 지역성 강화를 위한 편성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청주문화방송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안동문화방송, 제주문화방송, 청주문화방송, 충주문화방송에 대해서는 경영 효율성 제고 등 경영 합리화 방안과 자체제작 강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조건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G1에 대해서는 내부 유보금 규모 및 운영 기준 등을 마련토록 하며, (재)불교방송에 대해서는 광고 이외의 자원 마련 등 안정적인 자원 확보 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원음방송에 대해서는 역시 광고이외의 자원 마련 등 안정적인 자원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대여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리 등 안정성 확보 방안을 수립토록 하는 조건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경기방송에 대해서는 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겸직 등 인사 운영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전체 재허가 방송사에 대해서는 자율심의틀 강화토록 하고,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을 강화하며, 시청자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자체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며, 난시청 해소와 직접수신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도 수립하여 시행코자 권고하고자 합니다. 차세대 방송준비를 위한 계획도 수립 시행토록 권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한국방송공사와 (주)문화방송과 (주)SBS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간 상생을 위해 중소방송 등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SBS와 지역MBC 18개사, 지역민방 9개사에 대해서는 과도한 배당을 지양토록 하는 등 권고사항을 보내고, 지역MBC 18개사, 지역민방 9개사에 대해서는 지역방송에 대한 시청자 의견수렴 및 콘텐츠 품질 향상 방안을 강구토록 하며, 지역MBC 18개사, (주)KNN, (주)광주방송,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제주방송에 대해서는 내부 유보금 규모 및 운영 기준 등을 마련토록 하는 권고를 하고자 합니다. 지역민방 9개사와 (주)경기방송에 대해서는 최다액출자자와의 내부거래를 지양토록 권고하며, (주)광주방송, (주)전주방송, (주)청주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전문경영인 대표이사 임기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며, 종교방송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 운영에 관한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하고, TV 방송국에 대해서는 시청자의 선택권 보장과 편성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심야편성 운영시간을 일부 제한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외에도 방송사업자별로 부과하는 권고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방송공사에 대해서는 수신료 인상시 경영 합리화, 방송의 공익성 강화 및 시청자 권익 증진 등의 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주)문화방송에 대해서는 '12년 과업에 따른 조직 안정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며, (주)SBS에 대해서는 결합판매가 지역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토록 권고하고자 합니다. (주)MBC경남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주)경기방송에 대해서는 과도한 협찬 및 자체 광고 운영 등을 지양토록 하고, (주)YTN라디오에 대해서는 대표자와 편성책임자를 분리하여 운영토록 권고하고자 합니다. (재)기독교방송에 대해서는 자회사와의 자금 거래 지양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재)평화방송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권고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은 700점 이상 8개사에 대해서는 4년의 허가유효기간을 주고,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29개사는 3년의 허가유효기간을 주고, 650점 미만인 OBS경인TV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후에 재허가 여부를 의결한다, 이런 큰 틀의 보고입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OBS경인TV 측 이야기를 하려면 그것은 별도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이번 지상파 재허가심사위원회 책임을 맡았던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지역 방송사의 사장에 대한 의견청취 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송을 재허가 심사하는지, 이벤트 회사 허가를 심사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방송이 본유의 광고수익에 의한 정상적인 영업이 파탄나고 있다, 그래서 수익성 다각화, 사업 다각화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지금 상당히 많은 지상파가 건설업, 임대업, 홍보회사, 여행사, 극장... 이런 것들을 겸영하고 실질적인 수입이 그런 데서 나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더 커져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과거에 지상파 100년 역사 동안에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파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해 오던 기간 동안에는 방송 본유의 전파를 통해서 광고주도 획득하고 매출을 늘려서 사업을 해 왔던 것입니다만, 지금은 본령이 무너지고 부업을 통해 자기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부업을 통한 악순환이 계속 되어 갈 것이라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경기방송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도한 협찬강요 말아라, 지자체 운영 광고를 많이 뜯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도 권고사항에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방송매출이 낮기 때문에 보도국을 활용한 편법 영업을 활개치고, 그것은 결국 방통위가 가장 경계해야 할 방송의 공적책무에 대한 위협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향후에도 각별히 방송사의 영업추이나 영업행태를 경계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ITU 통계에서도 지상파의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은 5년 사이에 10% 이상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다매체, 모바일, 인터넷 이런 것의 영향으로 인한 지상파의 쇠락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예의주시하며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홍성규 위원님!

○ **홍성규 상임위원**

- 여기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0점 이상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 B그룹 중에서 보면 어떤 데는 650점 겨우 턱걸이로 650.29점, 650.64점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99점, 698점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3년에 해당이 되고,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조건을 달고 있지만 이 조건들은 지상파방송사면 당연히 해야 할 일 들입니다. 조건이라는 것이 사실은 조건이라는 말이 이상할 만큼 그런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번에 4년, 3년으로 하는 것에는 동의하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상한선을 5년으로 정하고 하한선을 3년으로 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하한선을 없애거나 아니면 하한선을 1년으로 해서 좀 더 변별력을 있게 해야 한다, 690점짜리와 650점짜리가 같은 것이냐, 그래서 지상파방송사들의 긴장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냥 대충 하면 3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을 깨야 한다, 그래서 당장 이 일이 끝나고 나서 바로 법 개정 작업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허가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허가제도 기간이 법상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단축할 수 있는 것은 2년으로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3년은 다 부여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또 다른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유효기간을 1년도 있고 2년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제도 또는 임시 허가제도를 준다면 그런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5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 방송법에서 정할 때는 방송은 무한이 발전할 것이다, 지역방송사는 아무리 많이 세워도 밥은 먹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상파가 급락하는 시점에 맞추는 입법적 조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 **양문석 상임위원**

- 저는 작은 것, 앞에서 큰 것들을 건드렸으니까 작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8페이지에 보면 '지역민방은 최대액출자자의 경영개입, 방송전문 경영인의 단기 임기 및 위험자산투자에 대한 손실 문제 등이 지적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청주방송, 전주방송, 광주방송이 단기 임기라는 것이 사장의 임기가 1년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양문석 상임위원**

-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사들이 평균 3년인데 사장 임기가 1년이면, 그러면 이사들이 사장을 어떻게 볼 것이며, 그 구성원들이 또 사장을 어떻게 볼 것이며, 그 사장은 1년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어떤 무리수를 둘 것이고, 중장기 기본적인 계획들, 방송발전에서 최소한의 공공성, 이런 부분들은 실적과 직결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제될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내부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건으로까지 부과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요구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이게 법적으로 일정한 쟁점이 되고 그리고 찬반 논란이 거의 1:1 수준이 되면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조건부로 올려서 강제이행케 하고, 그리고 그게 법적 다툼을 통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러면서 지역민방 오너들의 탐욕들, 그리고 철저하게 방송사 자체를 자회사 개념으로 자신의 홍보수단으로, 자신의 수주를 따내는 압력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명확하게 이 부분은 조건부로 들어와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법적 논란과 분쟁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뺏다면 차라리 그것을 조건부로 올려서 법적 논란을 통해서 사회적 이슈화를 만들고 그리고 여론을 향해서 지금 일부 지역민방의 오너들이 하는 행태들을 국민들 앞에 다 말씀드리고 이러한 행위들이 현재 각 지역에 있어서 만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고 방송을 운영하고 소유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앞쪽으로 당겨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MBC 경남, 이것을 서부경남지역 행사와 소외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권고사항에 올려놓았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경남MBC가 출범할 때 편성약속들 다 했고, 그리고 보도영역의 약속들을 다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미진하다는 내부 구성원들의 지적들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서부경남지역의 많은 시청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와 올해 계속해서 문제제기해 왔던 말이에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권고사항이 아니라 조건부로 앞쪽으로 당겨야 한다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제기할 것이 많으나 어쨌든 앞에서 큰 그림들은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면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4년 내내 재허가와 관련된 심의·의결을 할 때 사무국에 요구했던 것이 재허가를 하지 않았을 때, 재허가 거부를 했었을 때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전혀 안 됐던 말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시청자를 보호하면서 기본적으로 대주주와 경영진을 바꿀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조건이 되어야 재허가가 재허가답게 가는 것이고, 재허가를 1년을 하든 5년을 하든 그 재허가의 기본적인 힘을 받을 것이고, 재허가의 법적 정신을 사회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영방송 KBS, MBC는 재허가 못 받으면 배 짜라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경영진과 이사진을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한 법적 조건과 제도적 조건을 구비해 놓아야 공영방송도 정상적으로 긴장하면서 그 재허가에 대할 것이고, 재허가를 준비하면서 놓쳤던 것들을 하나하나 실행할 것이고, 그래서 재허가가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심사로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전체 지상파가 아까 부위원장 이야기했던 것처럼 허가만 받으면 영원토록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최소한 대주주와 경영진은 교체할 수 있는 그러한 재허가 거부가 났었을 때의 조치들이 따라야 한다, 그 방송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시청자에게 피해를 안 주는 한에서는 그 정도 선에서 법률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적하신 재허가 거부 이후의 제도적인 장치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고 드렸듯이 재허가 제도 개선 방안 검토 때 그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BC경남 부분은 저희 조건으로 지역편성 계획 부분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고 우리한테 그 계획을 제출하고 점검받도록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말씀하신 문제는 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해서 지금 권고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건으로 강화할 것인지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일단 잠깐만요. 부위원장께서 심사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장 임기 문제는 법적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권고사항이 아니라 재허가 조건에 넣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지적해 주신 대로 심사위원회에서도 아주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상의 이사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너희 방송사의 다른 임원이나 감사는 전부 2년 이상인데 왜 하필 사장만 1년이나, 너무 속 보이는 것 아니냐, 말하자면 사장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President라는 것은 맨 앞에 앉는 사람이고, 상식에 앉는 사람이고 사령관인데 사령관만 1년짜리로 놓고 운영하는 것이 그게 과연 말이 되느냐, 이것은 방송의 공적 운영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소유와 경영 분리 측면에서도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어서 지금 양 위원님 말씀이 아주 백번 맞습니다. 그래서 사장을 영업 일선에 앞세워 뭐라고 할까, 좀 가학적으로 메뚜기처럼 이렇게 날뛰게 만드는 그런 오너들의 심리를 충분히 심사위원회에서도 꿰뚫어보고 여러 가지 논리적인 토론이 있었습디만, 위원회에서 2가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리되어 있는 바대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더라도 3사에 대해서 방통위가 무겁게 권고로 이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고쳐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재허가 조건 못 지않은 무게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위원회의 결의로 비록 당사자인 오너들은 사적(私的) 자치(自治) 등등의 논리로서 대항할지 모르지만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재허가 조건으로 상식에 반하는 이러한 소유와 경영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건화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일단 OBS 건에 관해서 의견청취할 수 있도록...

○ 양문석 상임위원

- 아니, 위원장님!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의결을...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은 나중에 다 듣고 나서...

○ 양문석 상임위원

- 한꺼번에….

○ 이경재 위원장

- 예. 그러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인 안내해 주십시오.

(의견진술인 입장) (의견청취 부분 비공개)

【 11시 18분 속개 】

○ 이경재 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재허가 관련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OBS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님 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일단 백성학 최다액출자자의 의견을 들었고, 심사위원들의 신랄한 추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최다액출자자로서는 “앞으로 영업수지도 괜찮을 것이다, 적자도 줄여갈 것이다, 방송도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부족하면 오너가 모든 것을 채우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명시적인 각서나 기타의 추가되는 행정청으로서 신뢰할만한 말만이 아닌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서 OBS는 의결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양문석 위원이 제기하신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방송사 전주, 청주, 광주의 사장 임기 1년은 재허가 ‘이행조건’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도 “다른 이사, 감사는 전부 2년, 3년 임기를 주면서 사장만 1년만 명시한다는 것은 방송보다는 영업을 해라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로서는 재허가 조건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일부 심사위원만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권고가 좋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행조건으로 권고하는 것이, 방송의 공적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통위의 행정책임으로서도 충분히 근거가 있고, 사장 임기는 문면상으로는 임기를 정할 필요 없이 “이사, 감사, 사장 등의 임기를 사회 상규에 맞게 재조정하라”, 이런 정도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38개 방송사면 상당히 많은 것인데 오랜 기간 동안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수고해 주신 김충식 부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부위원장께서 정리하신 대로 대표자 임기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저도 한 말씀드리면 일단 사업자들 간에 재허가 기간을 차별화하는 것은 제도개선의 취지에 맞춰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3년, 4년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지금 OBS의 경우가 문제였었는데,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지표명을 말로는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문서를 받는 것을, 그러면 저희가 한 번 더 의결하기 전까지 그것을 받도록 해서, 그러니까 금년 12월 말까지는 되어야 하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20일이라든지 이렇게 그 때까지 받아서 그것이 확인되면 그다음에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가야 제대로 된 담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래서 그게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지금 경영 정상화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최대액출자자 이행각서, 기타주주의 증자 의향서, 비상시 재원 확보를 위한 자금 지원계획 및 투자의향서 등 이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그것을 보고 다시 재허가 거부냐,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 재허가냐라는 탈락과 구제의 선상에서 우리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아까 사장 임기와 관련해서 권고는 하되, 조건부라면 사장의 임기 여부를 어디다 박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안 했을 때 어떤 제재조항이 있는 것인지, 어떤 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 김충식 부위원장

-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고사항,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서 방송 전문경영인 사장의 임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째로 그냥 그대로 재허가 조건에 옮겨 놓으면 법적인 난점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것은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러니까 등급이 재허가 조건이 큰 등급이고, 지금 권고는 약화된 등급인데 약화된 등급에서 조건부 등급으로 올려 달라는 취지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법적으로 별 문제 없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회사의 정관에 그 부분이 명시되도록 해서 변경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인사 문제가 이렇게 간단치가 않은데 경영인과 소유주의 분리라는 원칙이 있지만 또 어떤 사건에 의해서 중간에 인사교체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

○ 김충식 부위원장

- 바꾸더라도 예를 들면 현재 1년으로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장 임기를 2년으로 바꾸더라도 무능하면 6개월, 1년, 1년 6개월에 항상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율로 됩니다. 다만, 현재 문제는 망신 주듯이 '사장 너만 1년 임기로 해라' 이렇게 정관에 해 놓는 것은 방송에 대한 모멸….

○ 이경재 위원장

-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 김충식 부위원장

- 예.

○ 이경재 위원장

- 정관을 개정하라는 것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이경재 위원장

-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정종기 국장, 다시 한 번 조치방안을 보고해 주십시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의결주문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재허가 대상 방송사 중에서 OBS를 제외한 한국방송공사 등 37개 사업자 261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하되, 허가 유효기간은 심사평가 점수에 따라 700점 이상인 KBS 등 8개사에 대해서는 4년, 그리고 700점 미만 650점 이상인 (주)강릉MBC 등 26개사에 대해서 3년으로 의결한다입니다. 그리고 <붙임>에 저희들이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하였는데 그중에서 (주)광주방송, (주)전주방송, (주)청주방송의 대표이사 임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수정·조정해서 그 부분을 이행하고 우리한테 그것을 제출하도록 권고를 내린 것을 조건으로 강화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하시는 것으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OBS 문제인데….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리고 OBS 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BS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미흡함에 따라서 재허가 의결을 오늘은 보류하시고,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 등을 다시 확인한 후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입니다. OBS는 금년 말 김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월 20일 정도가 적정할 것 같습니다. 12월 20일까지 주요주주의 증자 등을 포함한 재무구조 개선 세부추진 계획과 최대액출자자의 투자 재원 관련 계획 및 이행각서, 기타주주의 투자의향서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신뢰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을 문서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라고 의결하실 수 있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20일에 계획을 접수하고 나서 내부 재심사를 하고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연내로는 재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그 일정을 잘 짜셔야 할 것입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방금 정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급해서 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안건이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오후로 예정되어 있는 해외 출장 건이 있는데 시간상 제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제가 이 5건을 다 사전검토를 했고 또 사무국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건 전부 다 원안에 동의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리를 뜰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이경제 위원장

- 알겠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이렇게 재허가가 의결됨으로써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지상파방송 재허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충식 위원장님과 심사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허가 결과에 따른 조건과 권고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무진들은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심사위원회에서 건의한 재허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조속히 추진방안을 마련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23-43-163)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고시) 일부 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동 고시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추진경과는 9월 26일 제36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한바 있고, 10월 2일~10월 22일까지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0월 24일에 국무총리실 규제심사를 마쳤습니다. 네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17조제4호’가 동법 ‘제2조제2호마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저희 고시에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방법) 신설로 [별표]의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수단 표시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표시방법이 개정 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본인을 확인했었는데 우측의 개정 후에는 6가지의 나머지 본인 확인수단을 통해서 본인을 확인하도록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의결되면 관보 게재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 이경재 위원장

- <보고사항 가>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은 품질 및 요금경쟁을 통한 통신서비스 개선을 위해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보조금 관련 과징금 기준 개선입니다. 아래 박스를 보시면 먼저 과징금 부과상한액 상향 조정입니다. 현재 매출액의 1%로 되어 있는 것을 매출액의 2% 수준으로 현재보다 2배 상향 조정입니다. 두 번째는 부과기준을입니다. 현재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는 부과기준을 현행보다 1%p씩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박스를 보시면 현재 부과기준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현재 2~3%인데, 이를 3% 이상 4%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필수적 가중비율의 상향 조정입니다. 현재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 3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10%씩 해서 최대 50%까지 가중하던 것을 4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20%씩 해서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신규모집금지 관련 운영기준 마련입니다. 먼저 박스를 보시면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에 따라 이용자 신규모집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기준이 없어 규제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 표시를 보시면 현재 사업법 제52조제1항제10호에 이용자의 신규모집금지, 금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다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법률요건의 의미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법상 신규모집금지 조항의 요건인 '같은 행위' 및 '3회 이상 반복'의 판단기준을 명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같은 행위'의 의미를 명확화하는 것인데 특정한 위반행위가 사업법 시행령상 동일한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그다음에 '3회 이상 반복'의 판단기준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은 금지기간의 세부기준 마련입니다. 일반적인 금지행위 위반의 경우에는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금지기간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특히 단말기보조금 관련 위반의 경우에는 위반율 및 위반평균보조금 정도에 따라 금지기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특히 위법보조금의 경우에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한 경우 위반평균 보조금이 27만원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위반율이 70%를 초과할 경우에는 20일 이상 60일 이하 이런 형태로 해서 중대한 행위, 그다음에 중대성이 약한 행위의 금지기간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과열주도사업자 선별기준입니다. 위반행위로 인한 과열 주도 여부를 보여주는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그리고 방통위의 경고 조치 이후의 안정화 노력 정도를 나타내는 '정책반영도'의 지표를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별점을 받은 사업자를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래 박스를 보시면 위반율이 35점, 위반평균보조금이 35점, 그다음에 정책반영도는 30점인데 정책반영도의 내용은 위반율이 높았던 일수, 위반평균보조금이 높은 일수, 경고를 준수하기까지 소요된 기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30점해서 총계 100점으로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에 과징금 기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제 위원장

-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경재 위원장

- <보고사항 나>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고사유입니다. 관련고시에 있는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 지정기준과 의무사업자의 편성목표 달성시점 등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2011년 7월 방송법을 개정하여,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TV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화를 하였습니다. 같은 해 10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지상파·위성·종편·보도PP는 시행령에서 의무사업자로 규정하고, SO와 기타PP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 및 시청점유율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정해서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고시를 제정하여,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 지정기준, 장애인방송 편성목표 및 달성시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올해 9월~10월 장애인방송 제공 관련해서 방송사업자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역MBC사장협의회에서는 지역은 장애인방송 제작여건이 열악하므로 편성목표 달성시점 연기 및 제작비 지원 확대를 요청하였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는 SO가 우수한 지역성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의무편성비율 축소 및 달성시점 연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장애인방송 편성책임자들은 의무편성비율 확대에 따른 방송사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하여 편성목표 달성시점 연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여력이 있는 사업자 및 시청자가 많이 보는 채널 위주로 의무사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령상 의무사업자의 지정기준인 방송매출액과 시청점유율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의 건의사항인 광고침체에 따른 재정상황 및 열악한 장애인방송 제작인프라도 실제 현실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 지정기준 변경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SO의 경우 현행 방송매출액 중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비중이 1% 이하인 사업자에서 개정안은 방송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영업이익이 발생한 사업자로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PP의 경우에는 방송매출액 중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비중이 1% 이하이고, 시청점유율이 0.2% 이상인 사업장에서, 시청점유율이 0.5%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영업이익이 발생한 사업자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편성목표치 달성시점 연기는 광고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무사업자의 편성목표치 달성시점을 2년 연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12월에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내년 1월에 자체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의결 및 시행이 2014년 1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회 상임위원

-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것을 보니까 제정된 지 1년 만에 다시 또 사업자들의 건의를 들어서 다시 개정하게 되겠는데, 물론 정확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관계자와 의견수렴을 철저히 거쳐서 집약된 의견을 받아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을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경제 위원장

- <보고사항 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2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고사유입니다.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유예 기한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종편PP의 방송광고 수수료율을 규정하기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로는 2012년 5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였는데, 여기에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수탁 수수료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수탁수수료율이 규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10월~10월 31일까지 종편PP 미디어랩의 수탁수수료율 규정을 위한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을 개정하여 종편PP가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수탁수수료를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19 이내의 범위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의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표>를 보시면 현행은 제11조 방송광고수수료라는 항에 지상파의 경우에는 방송광고판매액의 13~16%, 지상파DMB의 경우에는 판매액의 13~18%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제11조제1항에 각호를 신설해서 제1호에는 지상파, 제2호에는 지상파DMB, 제3호에 종편PP에 대한 수탁수수료율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오늘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내년 1~2월 중에 규제위 심

사, 그리고 규개위 심사 후에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3월 중에 국무회의 의결을 걸쳐 시행하는 것으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미디어랩이 신설되거나 기존의 미디어랩에서 합쳐서 하거나 간에 종편미디어랩의 경우가 지상파미디어랩보다 더 많은 수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왜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현재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탁수수료율이 15%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15%, 그리고 지상파의 미디어랩 수입이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2개를 합치면 1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17.5%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조금 여유를 뒀서 15~19%로 규정한 것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이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이후에 종편도 미디어랩 체제로 들어와야 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해 2월에 랩법이 통과할 때 엄청난 갈등들이 있었고, 그 갈등의 핵심은 1사 1랩을 허용하느냐 마느냐,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상당 부분 많이 도와주셨고 국회에서 이야기 하셨는데, 1사 1랩을 허용하느냐 마느냐가 핵심적인 쟁점이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당시 1공영 1민영론과 1사 1랩론이 강하게 붙었고, 그리고 아주 치열하게 극적인 연출들이 끊임없이 지속되었던 한 3개월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종편에 대한 랩을 설립할 때에도 1사 1랩이 아니라 1공영 1민영 또는 1공영 2민영이라는 정신들, 그래서 난립하지 않고 광고국이 미디어랩으로 이름만 바꾸는 이런 형태가 아닌 엄격한 규정들, 특히 자본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엄격한 규정들을 만들어 내야 원래 미디어랩이라는 법적 취지 그리고 법적 정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준비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현재 법상으로는 종편사가 기존의 랩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각사가 각자 만들든지, 아니면 종편4사가 함께 만들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취지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이 부분은 미디어랩법 통과될 때 아주 쟁점사항이었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현재와 같은 자유로운 영업을 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되고 미디어랩을 반드시 통해야 한다는 그런 법의 정신에 따라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 시행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접수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경재 위원장

- <보고사항 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먼저 보고사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른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유예기한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서 종편PP 미디어랩 설립 허가에 필요한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경과는 관련된 절차 및 기준을 제정한 것이 2012년 7월 26일이었고, 이 기준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신규 허가, SBS 판매대행을 하는 (주)미디어크리에이트에 대해서 2012년 8월에 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종편PP 미디어랩 허가심사에 활용하도록 허가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 2>의 II 제목을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현행 규정은 ‘지상파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하도록 고시되지 않는 지상파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시 고려사항’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지상파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하도록 고시되지 않는 방송광고대행사업의 허가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시 고려사항’으로 개정함으로써 이 기준을 종편PP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접수해 주시면 행정예고, 규제위 심사를 거쳐 내년 2월에 위원회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이경재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

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 날짜는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경재 위원장

- 이상으로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2시 05분 폐회 】